

#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

의안 번호	22
----------	----

제출년월일 : 2010년 11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현재 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14개소)과 도시과 관리 사업소 이관예정(2011년)인 소규모오수처리시설(8개소) 및 한국환경공단 위탁 충주댐 하수도확충사업으로 시행 준공예정인 하수처리시설(6개소)에 대하여 관리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 군 직영 운영시 최소 관리인원 10명이 필요하나, 우리군 총정원제 시행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 검토 한 결과 민간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어
- 하수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평창군사무 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민간위탁 하수도 시설현황 및 주요사무

#### ○ 시설현황

구분	시설명	시설용량	개소수	비고
소계			28개소	
공공하수 처리시설	대관령처리장	5,000	1개소	사업소운영중
	평창처리장	1,800	1개소	댐상류 시공중 (‘10.12월 준공예정)
	봉평처리장	1,000	1개소	“
	마을하수도	20-500	13개소	사업소 운영중,
			8개소	도시과 운영 이관시설
4개소			댐상류 시공중 (‘11.6월 준공예정)	

#### ※ 시설별 현황 : 붙임 참조

- 대화·진부하수처리장 : 민간투자 (주)맑은평창 위탁운영중

#### ○ 주요사무

-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설물(건축,기계,전기)관리 및 수질시험분석
- 하수 슬러지 및 협착물 운반 처리
- 처리장내·외 환경정비

###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검토용역 결과

- 용역명 :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 검토용역
- 용역기간 : ‘09. 10. 20 - ‘09. 11. 27
- 용역비 : 17,630천원
- 용역회사 : 한약대학교 경제연구소 김명직
- 용역결과 :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전문화, 민간기술의 도입, 하수도 서비스 향상등 민간위탁 타당성 제시.

- 직영운영관리 : 우리군 총정원제에따른 인력확보가 어려워  
운영·관리 불가
- 민간위탁 방법 제시안
  - 1안 : 공개경쟁에 의한 업체선정
  - 2안 : 하수도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의거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등 위탁

○ 용역결과 위탁 운영관리비 비교

(단위:천원)

구 분	직영 및 민간위탁방법			비 고
	직 영	공개경쟁 입찰( 1안 )	한국환경공단등( 2안 )	
운영관리비	1,446,070	1,489,000	1,472,000	

※ 입찰방법 : PQ심사후 우선협상자와 제안(입찰)금액 협의 조정결정

**다. 군의회 동의 받고자 하는 주요 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영 ⇒ 민간위탁 운영·관리

<< 참고 :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 >>

- 선정 방법 : 공개경쟁입찰 (PQ심사)
- 위탁 형태 : 단순위탁(5년) ⇒ 5년마다 재선정
- 운영관리비 : 연간 총액계약 후 매월 균등분할 지급

※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10.11.3) 의결된 사항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나. 관계부처 승인 : 해당없음

### 【붙임 1】 위탁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구 분		위 치	처리공법	시설용량 (증설)	비 고
합 계		28 개소			
소 계		3 개소			
하수처리장	평 창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967	SBR-ICEAS	1,800톤/일	
	봉 평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484	SBR-ICEAS	1,000톤/일	
	대관령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56-17	SBR-ICEAS	3,500톤/일 (5,000톤/일)	
소 계		25 개소			
소 규 모 마 을 하 수 도	주 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590-2	KS-BNR	150톤/일	
	하 일	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6	침지식막분리 활성슬러지법	50톤/일	
	창 리	평창군 미탄면 창리 730	SBAF	200톤/일	
	방 립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184-3	CNR	170톤/일	
	계 촌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362-1	B3	170톤/일	
	창 동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421-5	고도접촉 산화법	250톤/일	폐쇄예정
	면 온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121-1	SBR	480톤/일	
	장 평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23-3	IC-SBR	250톤/일	
	용 전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169-1	B3	100톤/일	
	노 동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1002-1	B3	100톤/일 (200톤/일)	
	동 산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27-3	KS-BNR	200톤/일	
	간 평	평창군 진부면 간평2리 734-2	CNR	40톤/일	
	횡계3리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3리 9-2	KS-BNR	50톤/일	
	약 수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IC-SBR	100톤/일	
	하송빈	평창군 대화면 신리	BBF-SOD	50톤/일	
	하안미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IC-SBR	170톤/일	
	속 사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BBF-SOD	60톤/일	
	기화리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355	섬모상	40톤/일	
	마하1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38-1	B3	20톤/일	
	마하2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217-2	B3	20톤/일	마하1리와 연계
	회동리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CNR	50톤/일	
	방림2리	평창군 방림면 방림2리	CNR	50톤/일	
	상송빈	평창군 대화면 신2리 1052-4	모관침윤 산화법	43톤/일	
고토동	평창군 대화면 신리 324-1	고효율 접촉포기	30톤/일		
가평동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423-1	목편발효칩	30톤/일		

## 【관계법령 발췌】

### ○ 하수도법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 ② 법 제7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4. 「대한주택공사」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한국농촌공사 및 종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기관

###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6조(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영 제42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
3.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수질관리기술사 사무소
4.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분야 방지 시설업에 등록된 법인
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

가. 자본금이나 재산

- (1) 법인인 경우 : 자본금 2억 5천만원 이상
- (2) 개인인 경우 : 재산평가액 5억원 이상

나. 기술인력

- (1) 수질환경산업기사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2)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3) 유탄유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기계공정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 1명 이상
- (4)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